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상주시의회 의장 정 재 현

상주시 의회 규칙 제 34 호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 및 제71조”를 “제52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못할”을 “못한”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회의”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1절 회의의 개폐”를 삭제한다.

제84조 앞에 “제8장 질서”를 삭제한다.

제80조 앞에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를 삭제한다.

제76조 앞에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삭제한다.

제56조 앞에 “제4장 위원회”를 삭제한다.

제52조 앞에 “제6절 회의록”을 삭제한다.

제45조 앞에 “제5절 표결”을 삭제한다.

제34조 앞에 “제4절 발언”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3절 의안 및 동의”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2절 의사일정”을 삭제한다.

제97조를 제99조로 하고, 제95조를 제97조로 하며, 제93조를 제95조로 하고, 제91조를 제93조로 하며, 제89조를 제91조로 하고, 제87조를 제89조로 하며, 제85조를 제87조로 하고, 제83조를 제85조로 하며, 제81조를 제83조로 하고, 제79조를 제81조로 하며, 제77조를 제79조로 하고, 제75조를 제77조로 하며, 제73조를 제75조로 하고, 제71조를 제73조로 하며, 제69조를 제71조로 하고, 제67조를 제69조로 하며, 제65조를 제67조로 하고, 제63조를 제65조로 하며, 제61조를 제63조로 하고,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로 하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로 하고,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하며,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하고,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앞에 “제3장 회의”를 삽입한다.

제13조 앞에 “제1절 회의의 개폐”를 삽입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2항 중 “제13조”를 “제14조”로,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2절 의사일정”을 삽입한다.

제20조 앞에 “제3절 의안 및 동의”를 삽입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의 제목 “(의안의 제출·발언)”을 “(의안의 제출·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적의원 5분의 1”을 “4명”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제1항 중 “법 제66조의2제1항”을 “법 제77조”로 한다.

제35조 앞에 “제4절 발언”을 삽입한다.

제43조(종전의 제42조)제1항 중 “그 안건이 상정되기 전까지”를 “미리”로 한다.

제46조 앞에 “제5절 표결”을 삽입한다.

제49조(종전의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9조(종전의 제4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종전의 제48조) 제2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9조(종전의 제4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3조 앞에 “제6절 회의록”을 삽입한다.

제56조(종전의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앞에 “제4장 위원회”를 삽입한다.

제61조(종전의 제6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1조 앞에 “제5장 예산안 등과 결산검사”를 삭제한다.

제93조 앞에 “제9장 징계”를 삭제한다.

제98조를 제100조로 하고, 제96조를 제98조로 하며, 제94조를 제96조로 하고, 제92조를 제94조로 하며, 제90조를 제92조로 하고, 제88조를 제90조로 하며, 제86조를 제88조로 하고, 제84조를 제86조로 하며, 제82조를 제84조로 하고, 제80조를 제82조로 하며, 제78조를 제80조로 하고, 제76조를 제78조로 하며, 제74조를 제76조로 하고, 제72조를 제74조로 하며, 제70조를 제72조로 하고, 제68조를 제70조로 하며, 제66조를 제68조로 하고, 제64조를 제66조로 하며, 제62조를 제64조로 하고, 제62조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3조 앞에 "제5장 예산안 등과 결산검사"를 삽입한다.

제77조(종전의 제75조)제3항 중 "제71조제3항"을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78조 앞에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삽입한다.

제82조 앞에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를 삽입한다.

제83조(종전의 제81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6조 앞에 "제8장 질서"를 삽입한다.

제95조 앞에 "제9장 징계"를 삽입한다.

제95조(종전의 제93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제96조(종전의 제94조) 제1항 전단 중 "제93조제1항"을 "제9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93조제2항"을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종전의 제98조) 중 "법 제86조부터 제88조"를 "법 제98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제101조 및 제10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102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